

2023. 12. 14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
식품의약품부

식품의약품부장

황인숙

570-3211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화장품연구팀

김성단

570-3125

서울시, 유통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보존제 '사용 안전기준에 적합'

- 보건환경연구원, 시판 제품 104개 조사… 보존제 5종 모두 '기준치 이내 사용'
- 마트·백화점 등에서 유통 제품 구입해 조사, 조사대상 중 사용금지 보존제 불검출
- 연구원 “생활 속 안전성 확보, 유용한 정보 제공 위해 지속 조사 및 결과 공개”

-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(이하 '연구원')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'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' 강화에 따라 영유아·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보존제 성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.
-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·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104개를 분석한 결과, 검출된 보존제 5종이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.
- 시는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, 광고에 ▲사용연령 ▲아기 ▲아이 ▲베이비 ▲키즈 ▲베베 등이 사용 또는 표기돼 소비자가 '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'으로 인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.

- 기초 화장품, 색조 화장품,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13종에 대한 사용 및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,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이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.
 - 특히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(CMIT)·메칠이소치아졸리논(MIT)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·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(IPBC)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.
 -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.

- 한편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「화장품법」 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‘보존제’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식약처에 공유했다.

- 연구원은 화장품 구매 시 제품 용기 및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성분·함량에 유의하여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며,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‘의약품 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’ 화장품 규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.

-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어린이용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시민 궁금증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하고,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1

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검사내역

○ 조사대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

| 분 류 | 유 형 | 계 | 검사건수 | |
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영유아 화장품 | 어린이 화장품 |
| 합 계 | | 104 | 46 | 58 |
| 일반화장품 | 기초화장용 | 46 | 33 | 13 |
| | 색조화장용 | 17 | - | 17 |
| | 눈화장용 | 4 | - | 4 |
| | 목욕용 | 4 | - | 4 |
| | 방향용 | 2 | - | 2 |
| | 두발용 | 1 | - | 1 |
| | 인체세정용 | 4 | 1 | 3 |
| 기능성화장품 | 자외선차단제 | 26 | 12 | 14 |

○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구분을 위한 연령기준 및 표시·광고 범위규정

| | | 영유아 화장품 | 어린이 화장품 |
|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연령기준 | | 만 3세 이하 |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|
| 표시·광고 범위 | 표시 | · 화장품 1차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 (화장품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 표시 포함) | |
| | 광고 | ·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매체·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 | |

○ 검사대상 보존제의 영유아·어린이화장품 안전기준 및 검출여부

| 연번 | 성 분 | 영유아·어린이 화장품 안전기준 | 검출여부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메칠이소치아졸리논(MIT) |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0015% (기타 제품 사용금지) | 불검출 |
| 2 |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(CMIT & MIT) |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0015% (기타 제품 사용금지) | 불검출 |
| 3 | 살리실릭애씨드 | 사용금지 (다만, 샴푸는 제외) | 불검출 |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4 |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(IPBC) | 사용금지 (목욕용제품,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) | 불검출 |
| 5 | 메칠파라벤 | 단일성분일 경우 0.4%(산으로서) 혼합사용의 경우 0.8%(산으로서) ※ 주의사항 표기: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중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) | 불검출 |
| 6 | 프로필파라벤 | | |
| 7 | 에칠파라벤 | | |
| 8 | 벤질알코올 | 1.0% (다만,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%) | 검출 |
| 9 | 페녹시에탄올 | 1.0% | 검출 |
| 10 | 소르빅애씨드 | 소르빅애씨드로서 0.6% | 검출 |
| 11 | 벤조익애씨드 | 산으로서 0.5% (다만,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.5%) | 검출 |
| 12 | 데하이드로아세트애씨드 | 데하이드로아세트애씨드로서 0.6% (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) | 검출 |
| 13 | 클로페네신 | 0.3% | 불검출 |



〈영유아 · 어린이화장품 이미지〉